

있고 둘째, 受託者는 病院 運營에 필요한 公有財産을 無償 또는 有償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病院 運營에 따른 經費는 患者의 診療收入으로 充당하여야 하며 셋째, 受託者는 病院 運營에 따른 일체의 經費를 負擔하고, 사용하는 公有財産은 病院 運營에 직접 사용하며, 새로운 施設을 新·增築할 때는 竣工과 동시에 서울特別市에 寄附採納해야 하며 넷째, 委託의 解止時 市長은 解止事由가 發生할 때는 病院 運營의 委託을 解止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保社委員會의 修正案은 案 第1條에 “精神疾患의 診療 및 療養” 중에서 療養이라는 用語는 削除하여 精神保健法의 立法 趣旨에 맞게 고쳐서 精神病院, 療養所 그리고 社會福祉施設의 區分을 명확히 하도록 하게 하였고, 案 第5條第2項은 第7條第1項에 重複되어 削除하였으며, 案 第7條第5項은 受託者는 關係法令 및 이 條例에 의한 處分 또는 契約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는 것을 新設하여 受託者의 義務條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案 第9條의 委託關係 解止時 서울特別市 議會 所管 常任委員會의 意見을 들어 市民代表機關으로서의 統制, 調整의 權능을 갖도록 하는 등 地方自治時代에 맞는 方向으로 修正 하였습니다.

保健社會委員會에서는 이 條例가 매우 중요한 점을 考慮하고 또한 이 條例의 根據法인 精神保健法 案이 현재 國會에 繫留 中인 점을 勘案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報告드리며, 자세한 內容은 配布해 드린 報告書를 參考하시고 아무쪼록 保社委員會의 議決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柳光司議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立精神病院設置및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요양”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중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병원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동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병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병원운영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병원을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위탁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p>한다.</p> <p>제4조(입원등) 병원의 운영및 입원대상자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 사용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수가) ①진료수가및 약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의료보험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병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p> <p>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자진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환자진료를 위한 병원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위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조(감독) ①시장은 병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장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395호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③(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의료법인 용인유지 재단이 위탁 받아 운영중인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p> <hr/> <p>6. 서울特別市水道施設의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43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水道施設移設等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p> <p>水資源管理委員會의 具齊南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具齊南議員 존경하는 白昌鉉 議長님 그리고 千百萬市民의 福利增進과 市民의 便益增進과 國際化 都市로 새로이 탄생하는 水道行政 發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同僚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서울特別市水道施設移設等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하게 된 本議員은 水資源管理委員會所屬 具齊南議員입니다.</p> <p>本議員이 審査報告할 案件은 1992年 12月 9日 大統領令 第13771號에 의거 水道法施行令이 全文 改正되어 서울特別市上水道工事의 行爲 原因과 損壞者 등에 대한 處理指針을</p>
---	---